파주시 공고 제2021-2600호

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4항,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파 주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업계획승인 취소
2. **공고기간:** 2021. 12. 3. ~ 2021. 12. 21. (19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공장건축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업계획승인 취소
5. **법적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6. 대 상 자

업체명	대표자	공장 소재지	예정된 처분
쿡	서*혁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114-1 외 6필지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7. 청문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1. 12. 22.(수) 14:00**

나. 청문장소: 파주시청 본관 3층 의회법무과 내 청문실

다. 의견제출: 청문일 출석 불가 시 서면 또는 구술 등으로 미리 의견서 제출

- 서 면: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
- 전자우편 (in4you@korea.kr)

8. 기타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제4항, 같은 법 제35조(청문의 종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마치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 (☎ 031-940-454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